

의안번호	2201012
의 퇴 인	김한규의원
회 답 일	2024. 7.31
추계번호	24D1351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5조의2 제2항제1호(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)	자활지원계정 ¹⁾ 으로 조성하는 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명시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5조의2 제2항제1호(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- 1) 이 법 제55조의2(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)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.
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.
1. 정부의 출연금
 2.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(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)
 3.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먼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 4.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
 5. 보증료 수입금
 6.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
 7.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
 8.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

2. 상세 사유

□ 자활지원계정 조성 재원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추가(안 제55조의 2제2항제1호)

-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(정부 출자 법인)의 자활지원계정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추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자활지원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,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,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·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, 자활지원계정의 2024년 수입액은 [표 1]과 같이 8,371 억원이며, 지출액은 1조 5,951억원임
- 개정안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에 정부 출연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연기준이 다를 수 있고, 일회성인지 여부 등 출연 주기 등에 대하여도 현 단계에서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[표 1] 자활지원계정 수입 지출 현황: 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4
수입	출연금	563,445
	부대수입	13,629
	부대수입(기타)	1,040
	기타	258,937
	수입 총계	837,051
지출	인건비	2,928
	경상운영비	706
	사업비	1,590,811
	기타	641
	지출 총계	1,595,086

자료: 서민금융진흥원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